|  |  |  |
| --- | --- | --- |
|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0]65호  북경, 천진, 대련, 흑룡강, 상해, 강소, 절강, 안휘, 하문, 강서, 산동, 호북, 호남, 광동, 심천, 중경, 사천, 섬서성(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상무주관 부문, 과기청(위원회, 국), 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관련 문건 정신에 따라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I. 2010년 7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북경, 천진, 상해, 중경, 대련, 심천, 광주, 무한, 하얼빈, 성도, 남경, 서안, 제남, 항주, 합비, 남창, 장사, 대경, 소주, 무석, 하문 등 21개 중국 서비스 외주 시범도시(이하 시범 도시)에서 아래와 같이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1. 인증을 거친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에 대하여 15% 감면한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2. 인증을 거친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에 발생한 직원 교육경비 지출 중 임금총액의 8%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초과하는 부분은 이후 납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II. 본 통지 제1조에서 규정하는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은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 인증 범위(시행)》(첨부 참조 요망)중 한가지 혹은 여러 기술 선진형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거나 비교적 우수한 R&D 능력을 갖출 것.  2. 기업의 등록지 및 생산 경영지가 시범도시(구, 현, 현급 도시 등 모든 행정 구역)내 일 것.  3. 기업은 법인 자격을 갖추고, 최근 2년에 수출입 업무 관리, 재무 관리, 세수관리, 외환관리, 세관관리 등 방면에서 위법행위가 없을 것.  4.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원 비율이 전체 비율에 50% 이상일 것  5. 《기술 선진형 서비스 업무 인증 범위(시행)》 중의 기술 선진형 서비스 업무의 수입이 해당기업의 당해 총 수입의 50% 이상일 것  6. 경외 외주 업무에 종사하고 취득한 수입이 기업의 당해 총 수입의 50% 보다 낮지 않을 것  경외 외주 업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이란 기업이 경외 단위와 그 체결한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 혹은 직접 하도급 기업에 의하여 경외 단위에 제공한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 인증 범위(시행)》에 규정한 정보 기술 외주 서비스(ITO), 기술성 업무 프로세스 외주 업무(BPO) 및 기술성 지식 프로세스 외주 서비스(KPO)를 말하며 상술한 경외 단위로부터 취득한 수입을 말한다.  III.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의 인증 관리  1. 시범도시 인민정부 과기 부문이 본 급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 개혁 부문과 회동하여 본 통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또한 과기부, 상무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및 소재 성(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의 과기,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시범도시 소재성(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 과기부문은 본 급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위원회와 회동하여 관할 시범도시의 기술 선진형서비스 기업 인증 관리 업무를 책임 지도한다.  2.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은 반드시 소재 시범도시 인민정부 과기부문에 신청을 해야 하고 시범도시 인민정부 과기부문에 의하여 본 급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위원회 부문이 연합하여 심사하고 인증 문건을 발급한다.인증 기업 명단은 반드시 즉시 과기부, 상무부, 재정부, 국가세무 총국 및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와 소재 성(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의 과기,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 부문에 보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3. 인증을 거친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은 관련 인증 문건을 지참하여 현지 주관 세무 기관에 신청하여 본 통지 제1조에서 규정한 기업 소득세 우대 정책 사항을 처리한다. 기업 소득세 우대 사항을 향유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 조건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주관 세무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세수 우대 정책 조건에 다시 부합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법에 의거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세수 우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중 기업이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의 자격을 갖추지 않음을 발견했을 경우 기업의 세수 우대 정책을 잠시 중단해야 하고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재청해야 한다.  4. 시범 도시 인민정부의 과기,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위원회 부문 및 소재 성(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의 과기, 사우,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위원회는 인증을 거치고 세수 우대 정책을 누리는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에 대하여 밀착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경영범위 변경, 합병, 분립, 전업,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만약 인증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즉시 세수 우대 정책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IV. 시범도시 인민정부 재정, 세무, 상무, 과기 및 발전개혁 부문은 본 통지의 각 항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소통과 협조를 다해야 한다. 정책 실시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즉시 각급의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과기부 및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V.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 관련 세수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09]63호)는 2010년 7월 1일부로 폐지한다.  첨부: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인증 범위(시행)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01119/0011431e80bc0e507f1801.doc>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0년 11월 5일 |  | **关于技术先进型服务企业有关**  **企业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10]65号  北京、天津、大连、黑龙江、上海、江苏、浙江、安徽、厦门、江西、山东、湖北、湖南、广东、深圳、重庆、四川、陕西省（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商务主管部门、科技厅（委、局）、发展改革委：  根据国务院有关文件精神，现就技术先进型服务企业有关企业所得税政策问题通知如下：  一、自2010年7月1日起至2013年12月31日止，在北京、天津、上海、重庆、大连、深圳、广州、武汉、哈尔滨、成都、南京、西安、济南、杭州、合肥、南昌、长沙、大庆、苏州、无锡、厦门等21个中国服务外包示范城市（以下简称示范城市）实行以下企业所得税优惠政策：  1.对经认定的技术先进型服务企业，减按15%的税率征收企业所得税。  2.经认定的技术先进型服务企业发生的职工教育经费支出，不超过工资薪金总额8%的部分，准予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超过部分，准予在以后纳税年度结转扣除。  二、享受本通知第一条规定的企业所得税优惠政策的技术先进型服务企业必须同时符合以下条件：  1.从事《技术先进型服务业务认定范围（试行）》（详见附件）中的一种或多种技术先进型服务业务，采用先进技术或具备较强的研发能力；  2.企业的注册地及生产经营地在示范城市（含所辖区、县、县级市等全部行政区划）内；  3.企业具有法人资格，近两年在进出口业务管理、财务管理、税收管理、外汇管理、海关管理等方面无违法行  为；  4.具有大专以上学历的员工占企业职工总数的50%以上；  5.从事《技术先进型服务业务认定范围（试行）》中的技术先进型服务业务取得的收入占企业当年总收入的50%以上。  6.从事离岸服务外包业务取得的收入不低于企业当年总收入的50%。  从事离岸服务外包业务取得的收入，是指企业根据境外单位与其签订的委托合同，由本企业或其直接转包的企业为境外单位提供《技术先进型服务业务认定范围（试行）》中所规定的信息技术外包服务（ITO）、技术性业务流程外包服务（BPO）和技术性知识流程外包服务（KPO），而从上述境外单位取得的收入。  三、技术先进型服务企业的认定管理  1.示范城市人民政府科技部门会同本级商务、财政、税务和发展改革部门根据本通知规定制定具体管理办法，并报科技部、商务部、财政部、国家税务总局和国家发展改革委及所在省（直辖市、计划单列市）科技、商务、财政、税务和发展改革部门备案。  示范城市所在省（直辖市、计划单列市）科技部门会同本级商务、财政、税务和发展改革部门负责指导所辖示范城市的技术先进型服务企业认定管理工作。  2.符合条件的技术先进型服务企业应向所在示范城市人民政府科技部门提出申请，由示范城市人民政府科技部门会同本级商务、财政、税务和发展改革部门联合评审并发文认定。认定企业名单应及时报科技部、商务部、财政部、国家税务总局和国家发展改革委及所在省（直辖市、计划单列市）科技、商务、财政、税务和发展改革部门备案。  3.经认定的技术先进型服务企业，持相关认定文件向当地主管税务机关办理享受本通知第一条规定的企业所得税优惠政策事宜。享受企业所得税优惠的技术先进型服务企业条件发生变化的，应当自发生变化之日起15日内向主管税务机关报告；不再符合享受税收优惠条件的，应当依法履行纳税义务。主管税务机关在执行税收优惠政策过程中，发现企业不具备技术先进型服务企业资格的，应暂停企业享受税收优惠，并提请认定机构复核。  4.示范城市人民政府科技、商务、财政、税务和发展改革部门及所在省（直辖市、计划单列市）科技、商务、财政、税务和发展改革部门对经认定并享受税收优惠政策的技术先进型服务企业应做好跟踪管理，对变更经营范围、合并、分立、转业、迁移的企业，如不符合认定条件的，应及时取消其享受税收优惠政策的资格。  四、示范城市人民政府财政、税务、商务、科技和发展改革部门要认真贯彻落实本通知的各项规定，切实搞好沟通与协作。在政策实施过程中发现的问题，要及时逐级反映上报财政部、国家税务总局、商务部、科技部和国家发展改革委。  五、《财政部 国家税务总局 商务部 科技部 国家发展改革委关于技术先进型服务企业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财税[2009]63号）自2010年7月1日起废止。  附件：技术先进型服务业务认定范围（试行）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01119/0011431e80bc0e507f1801.doc>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商务部  科技部  国家发展改革委  二○一○年十一月五日 |